



2006년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청요강 (박사후 국내·외연수 및 학술연구교수)

2006. 3.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주요사항 요약 및 신구대비표

항목	2005년	2006년	비고
지원예산	- 박사후국외연수 : 12,000백만원	 신규과제지원비: 13,028백만원 박사후국내연수: 4,746백만원 박사후국외연수: 4,242백만원 학술연구교수: 4,040백만원 	
사업 통합	○ 학술연구교수지원 ○ 전문연구인력지원 ○ 박사후연수과정지원(국내·외) ○ 해외 Post-Doc.연수지원(이공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학술연구교수지원박사후 국내연수지원박사후 국외연수지원	사업 통합
지원 규모	 ○ 박사후 국내연수 - 1인당 연 2,100 만원 · 연수지원금 : 1,800만원 · 연수기관지원금 : 100만원 · 각종보험부담금 : 200만원 ○ 박사후 국외연수(인문사회분야) - 체재비 : 연 2,400 만원이내 - 항공료 : 정부예산 편성기준 왕복항공료 지급 ○ 학술연구교수지원 - 1인당 연 3,000 만원 · 연구활동비 : 연 2,400만원 · 연구비 : 연 400만원 · 연구기관지원금 : 연 200만원 	 ○ 박사후 국내연수 - 1인당 연 2,700만원 · 연수지원금 : 2,400만원 · 연수기관지원금 : 100만원 · 각종보험부담금 : 200만원 ○ 박사후 국외연수(전학문분야) -체재비: 연 3만불 이내 -항공료: 재단 방침에 의거 지급 ○학술연구교수지원 - 1인당 연 3,600 만원 · 연구발동비 : 2,400만원 · 연구비 : 600만원 · 연구기관지원금 : 400만원 (퇴직금 포함) · 보험부담금 : 200만원 	
지원 기간	○ 해외 Post-Doc.연수지원(이공계) - 1년(장기연수 필요한 경우 2년)	○박사후 국외연수(이공계) - 1년 (1회에 한해 지원)	

항목	2005년	2006년	비고
	○ 학술연구교수, 전문연구인력 - 기수혜자 신청불가	○ 학술연구교수 - 기수혜자 신청가능 (총 2회까지 수혜가능) -학사학위 취득대학 신청 가능	
신청 자격	- 학사학위 취득대학 신청 불가 ○해외 Post-Doc.연수지원(이공계) - 소속이 있는 자 대상 (전임교원 포함)	 박사후 국외연수 미취업자 신청 가능 전임교원 제외 * 2007년부터 전일제 취업자 제외 * 2007년부터 이공계분야 공모횟수 1회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임 	
추천 인원	○학술연구교수 : 기관당 2명 ○전문연구인력 : 기관당 3명 (전학문분야 추천)	○학술연구교수 : 기관당 10명 (인문사회, 이공계분야 각 5명)	
지원 조건	○해외Post-Doc.연수지원(이공계) - 국외 연수기관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원금 차감지원 - 기업체 소속 연구자 연수비 차감지원	- 폐지	
학술연구 교수지위	ㅇ 연단위 계약 체결	o 3년 계약 체결	
연구참여 수당	-(전문)학사과정생 : 연 360만원이내 -석사과정생 : 연 720만원이내 -박사과정생 : 연 1,080만원이내	-(전문)학사과정생 : 연 480만원이내 -석사과정생 : 연 960만원이내 -박사과정생 : 연 1,440만원이내	

차 례

1. 사업목적 2. 지원방향 	1
2. 지원방향	
Ⅱ. 사업내용	1
1. 지원대상 및 분야	1
2. 지원 예산	2
3. 지원규모 및 기간	2
4. 학술연구교수선정자의 지위	3
Ⅲ. 신청	3
1. 신청자격	3
2. 신청기간	4
3. 신청방법	4
4. 온라인 신청절차	$\overline{4}$
5. 연수비신청 및 연수참여 제한	8
Ⅳ. 심사 및 선정	10
1. 심사절차	10
2. 심사방법 및 내용	10
2. 百个16日 天 年6	10
Ⅴ. 연수(연구)비 지급 및 관리	13
1. 연수(연구)비 지급	13
2. 연수(연구)비 관리	13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4
1. 연수(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4
3. 연수(연구)자 사후관리	17
	11
Ⅷ. 간접연구비 지원	19
Ⅷ. 기타사항	19
붙임 1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2 연구계획서 양식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목적

-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학술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질적 연구능력 향상 유도
-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가 대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연구 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대학연구소의 활성 화를 유도하여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방향(전략목표)

-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 연수기회 확대
- 여성 연구자 우대
-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을 Junior그룹과 Senior그룹으로 구분하여 지원
- 연수기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있는 경우 우대
- 국외 연수지역의 다변화를 위하여 북미주(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 신청자 우대

Ⅱ. 사업내용

1. 지원대상 및 분야

가. 지원대상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학술연구교수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ㅇ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ㅇ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
한 자(2001. 1. 1. 이후취득)	(2001. 1. 1. 이후취득)	교육법 및 특별법(한국학중앙
ㅇ 기수혜자 신청 가능	ㅇ 기수혜자 신청 가능	연구원 포함)에 의거하여 설
- 총 2회까지 수혜가능	- 총 2회까지 수혜가능	립된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단, 이공계분야는 1회만 가능)	소속 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절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학 총(학)장이 3년 계약으로
사유가 없는 자	사유가 없는 자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단,
※ 2006년도 박사학위 취득예기	※ 2006년도 박사학위 취득예정	현재 취업중인 자는 선정 후
자 신청가능	자 신청가능	1개월 이내에 퇴직하여야 함
※ 전일제 취업자(계약에 의학		ㅇ 기수혜자 신청 가능 (총 2회
전일제 취업자 포함)는 제외		까지 수혜가능)
※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 등	* Ж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 국	
공립연구소 연구원 제외	공립연구소 연구원 제외	

※ 2007년도부터는 국외연수의 경우에도 전일제 취업자 제외 예정

나.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예체능분야 포함)
- 이공계 전 분야(의약학 분야 포함)

다. 연수기관

- 박사후 국내·외 연수 : 연수기관은 국내연수의 경우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며, 국외연수의 경우는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함
- ※ 박사후 연수기관은 신청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과 다른 대학(기관)이어야 함
- ※ 박사후 연수과정 기 수혜자의 경우 기 연수기관으로도 재신청가능
- 학술연구교수 : 국내 대학 부설연구소

2. 지원예산(신규지원비)

가. 전 **학문분야** : 13.028.000천원 내외

박사후 국내연수: 4,746,000천원(168과제 내외)
 박사후 국외연수: 4,242,000천원(185과제 내외)
 학술연구교수 : 4,040,000천원(112과제 내외)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워규모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학술연구교수
○ 연수지원금2,400만원	ㅇ재단이 정하는 항공료	ㅇ 연구활동비(인건비):2,400만 원
○연수기관지원금100만원	ㅇ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	ㅇ연구비: 600만원
○보험부담금: 200만원	칙적용 재단이 정하는 체	ㅇ연구기관지원금: 400만원
	재비(단, 미화기준 3만불	(퇴직금 포함)
	이내)	○ 보험부담금 : 200만원
1인당 연 27,00만원	항공료 및 체재비	1인당 연 3,600만원

나. 지워기간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학술연구교수
1년	1년	3년
*기수혜자의 경우 1회에	* 1회에 한하여 지원	*기수혜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한해 추가지원 가능

- ※ 연구개시일 : 9월 1일(박사후 국내연수 및 학술연구교수)
- ** 박사후 국외연수 출국일은 '06. 9. 1부터 '07. 2. 28까지이며, 연수개시일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다. 추천인원

- o 박사후 국내·외 연수 : 기관추천 인원수 제한 없음
- 학술연구교수 : 1개 기관당 10명(인문사회분야 5명, 기초과학분야 5명)

4. 학술연구교수 선정자의 지위

가. 지위

- 본 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자를 학술연구교수(MOEHRD-KRF Research Professor)라 함.
- 대학은 연구교수의 사무실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3년간 지원
 을 원칙(연단위로 계약)으로 대학부설연구소 '전임 연구교수'로 채용함.
- 연구기관은 전임 연구교수에게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나. 역할 및 활용

 학술연구교수는 연구를 위주로 하되 강좌 개설에 관한 것은 소속기관의 운영 계획에 따라 활용 가능함. 단, 소속기관 강의시 1강좌를 초과하는 경우 강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타교 강의는 1강좌 이내로 제한함.

Ⅲ. 신청

1.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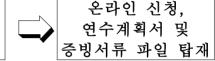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 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 박사후 연수: 1편 이상인 연구자
 - 학술연구교수: 인문사회분야 2편, 이공계분야 3편 이상인 연구자
-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등)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지 원 신청시 온라인 입력하여야 함

- 2. 신청기간 : 2006. 5. 10(수) 10:00 ~ 5. 31(수) 18:00 까지
-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www.krf.or.kr에 접속하여 신청)

4. 온라인신청절차

가. 박사후 국내·외 연수

- -연수기관 확정 및 협의근거자료(초청장 등) 입수
- -연수계획서 작성(hwp 또는 ms-word)
-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 입력(수정)





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박사학위취득(연수)기관 제출



박사학위취득(연수)기관 온라인 신청 사항 확인



신청 완료

1) 온라인 신청 전

- 국외연수 신청자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대학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해 신청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연수기관 확정 및 협의근거자료(초청장, 연구계획 관련 교환서신 등)를 입수(e-mail 포함, 온라인 신청시에 hwp, ms-word 또는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탑재함)하여야 함
- 국내연수 신청자는 국내 연수희망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협의 를 통해 선정시 연구비관리 여부 및 4대 보험가입 여부 사전협의 필요
- 재단 홈페이지「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등)를 입력, 수정함
- ※ 온라인 신청 중이나 이후에 수정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
- ※ 입력한 연구업적 등은 심사시에 고려사항이 됨
- 온라인 신청시 연수계획서(양식은 붙임 참조)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 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hwp 또는 ms-word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수계획서를 미리 작성함

2) 온라인 신청

- 가) 온라인 신청 사항 입력, 연수계획서 파일 및 증빙서류 파일 탑재
- 연수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수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수계획서" 파일 및 "증빙서류"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며, "연수계획서" 파일 탑재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 ※ 대표업적은 "Ⅱ. 사업내용(신청 업적 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1편만 선택함(2편 이상 선택할 수 없음)
- ※ 접수번호는 파일탑재 후에만 볼 수 있으며, 접수번호 확인이 안 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임
- 나) 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파일 탑재 관련 사항
- ㅇ 연수계획서 파일 내용
 - 연수계획서
 -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 ※ 상기 내용은 반드시 하나의 파일(hwp 또는 ms-word 사용)로 탑재 하되 위의 순서대로 편집하여야 함
- 증빙서류 파일 탑재방법 : 초청장 또는 연수계획 관련 교환서신 (E-mail 포함, 모든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첨부)은 반드시 hwp, ms-word 또는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탑재함 (jpg파일 등 제외)
- ㅇ 파일탑재시 유의사항
 - 탑재된 증빙서류 파일은 "조회"버튼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 확인할 수 있음.
 - ※ 단, "증빙서류 보기"로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회" 버튼으로도 확인할 수 없음
 - 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파일은 탑재하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한 면에 2쪽 이상 보이게 되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파일 탑재 이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1쪽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하여야 함

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연수자가 입력한 신청내용, 연수계획서 및 증 빙서류 파일의 수정·교체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교체 할 수 없음
- ※ 수정·교체한 후에는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함 (클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

여 주시기 바람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입력사항을 입력 완료하지 않거나 연수 계획서를 탑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3) 온라인 신청 후

가) 연수자

- o 박사후 국외연수자: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아래 서류 각 1부를 출력하여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박사학위 취득(예정)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재단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 o 박사후 국내연수자: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아래 서류 각 1부를 출력하여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연수대학(연수예정대학)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재단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 ㅇ 제출서류
 - 온라인 입력 내용 (온라인 신청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 연수계획서 (연수계획서, 대표연구업적요약문, 박사학위논문요약문)
 - 박사학위 취득 학위기 사본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 연수기관의 학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국내연수)
 - ※ 추천자는 추천시 연수신청자의 취업상태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일제 취업자가 아니어서 연수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함
 - 국외 연수교수 초청장 또는 연구계획 관련 교환서신(e-mail가능)
 - ※ 초청장 또는 교환서신에는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내용이 포함되어 하며, 모든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 첨부

나) 연수기관

- 온라인 신청 기관 확인 : 2006.6.1(목) 10:00 ~ 6.2(금) 18:00까지
-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수자의 신청자격(박사학위 취득(예정)여부, 대학 전임교수·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여부 및 타 사 업 참여 등) 부합여부, 온라인 신청여부 및 내용 등을 재단 홈페이지 및 연수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상기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연수자로부터 제출 받은 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 (단. 재단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함)

나. 학술연구교수



1) 온라인 신청 전

- 신청기관: 재단 홈페이지 '정보등록'→ '대학부설연구소등록' 코너에서 해당 연구소 현황을 최신자료로 수정・입력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 도중이나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여도 업적 등이 반영되지 않음. (동 연구소 현황 자료도 심사시 활용될 수 있음)
-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등록」코너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 뒤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 청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 도중이나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여도 업적 등이 반영되지 않음.

2) 온라인 신청

가) 신청기관

- 신청기관은 학술연구교수 신청자를 추천한 후, 해당 기간 내 재단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일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양식1) 파일 탑재
-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만 탑재 가능(두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작성한 파일도 탑재 불가능)
- 학술연구교수활용계획서는 신청자 1인당 1부씩 작성하여야 함. 신청기 관(대학교)과 연구소에서 연구소 성격 및 연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작성
 - 기관 : 공간확보, 강의배정, 임용, 규정관련, 연구비 관리, 각종 시설 이용, 인력활용계획 등
 -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필요성, 연구참여, 강의, 연구공간 등
- 온라인 신청시의 추천 순위와 총(학)장 추천서(양식2)의 추천 순위가
 동일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로그인 : 연구비 중앙관리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
- 신청기관은 1단계 종료 후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2단계 온라인 신청토록 안내할 것

나) 신청자

- 1단계 종료 후 신청자 개인별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 온라인신청시 연구계획서(양식3) 파일 탑재
-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만 탑재 가능(두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작성한 파일도 탑재 불가능)
- 대표업적 선택시 200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발표된 본인의 연구업적 중 가장 우수한 업적을 인문・사회・예술・체육분야 연구자는 2편, 자연분야 연구자는 3편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연구업적의 요약문(초록)을 연구계획서(양식3) 안에 기재하여야 함(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업적과 연구계획서 안의 업적이 일치하여야 함)
- 분야의 특성상,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A&HCI급, SSCI급, 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계획서(양식3) 안에 기재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 2006년도 학술연구교수 연구비산정·집행기준표(붙임1)을 참조하여 연구비(직접비) 600만천원에 대한 예산 수립 후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단위에 주의). 온라인 입력 내용만 인정하며, 연구계획서 파일안에 기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3) 온라인 신청 후

가)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 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 나)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자 소속기관의 중앙관리 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계획서, 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제출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만일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않음
 - 온라인 신청 기관 확인 : 2006.6.1(목) 10:00 ~ 6.2(금) 18:00까지
 - o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5. 연수(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제한

가. 연수(연구)비 신청제한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내 3가지 Track(박사후 연수 국내・국외, 학술연 구교수) 중 한 가지 Track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박사후 국내연수의 경우 박사학위취득기관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수 없으며,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박사후 국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음
- 본 사업(박사후 연수지원과 학술연구교수)에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 BK21사업 등 타 사업의 박사후연수과정자(계약교수 포함)로 참여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보고서 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림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연구 참여 제한

- ㅇ 본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박사후연수과정,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의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1과제에 해당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 정책개발 연구과제 및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과 과학재단 이관사업 중 2004년도에 선정된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 우수여성과학 자도약지원연구,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

원연구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박사후 국외연수의 경우 국내에서 시행하는 타 연구사업(BK21사업 포함)
 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또는 연수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는 연수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연수기간)과 본 사업 연수기간이 중복되게 연수(연구)에 참여할수 없음
 - 이미 수혜받은 과제의 연구기간(연수기간)이 종료되어야만 국외연수 수 행이 가능함
 -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12.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지급은 중지하고 신규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 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
 -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 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 사 내 용	비고
1 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ㅇ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 단계	종합심사	ㅇ 최종 선정과제 확정	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 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ㅇ 심사내용 : 신청 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ㅇ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연구계획서 내용심사

※ 동 사업 기 수혜자의 재신청과제는 기수행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를 고려, 신규과제와 분리하여 심사함

ㅇ 심사항목 및 배점

■ 박사후 국내·외 연수과정지원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연수과제의 부합성 (12)	신청자의 학력・경력과 연수과제가 부합하는가	
연수자 부문 (35)	연수자의 우수성 (35)	연수자의 연구수행 능력 (12)	신청자의 최근 5년간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수목표의 달성 가능성 (11)	연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연수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40)	지원의 필요성 (20)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이며 연수의 필요성이 있는가	
연수 관제		연수성과의 기여도 (10)	학문분야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박세 부문 (40)		연수계획의 타당성 (5)	전반적으로 연수계획이 타당한가	
		연수과제의 우수성 (5)	연수과제가 국가에서 지원할 만큼 우수한 과제 인가	
연수 기관 부문 (25)	연수기관의 적합성 및 우수성 (25)	연수기관의	연수기관의 적합성 (15)	연수기관이 연수를 수행할 만큼 우수한 지식을 보유한 기관인가 (국내·외 연수) 연수기관은 연수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는가(국외연수)
		상호협력 및 발전가능성(5)	연수완료 후 지속적인 협력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지식전수 가능성 (5)	연수기관은 연수자가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을 전수하는가	

■ 학술연구교수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독창성 (30)	연구주제의 독창성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구주제		연구방법의 독창성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	
(50)	학문발전	학문적 가치	○연구 주제의 중요성이 큰가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공헌도 (20)	학문의 파급효과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연구목적 달성시 관련 과학적 지식을 크게 진보 시킬 것인가?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내용 및 방법 (30)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 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하는가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선행 연구들이 빠짐없이 조사되었는가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 법은 적절한가
및 실현가능 성 (50)		실행계획의 구체성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자료수집, 분석, 해석 방법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0)	연구역량 (10)	연구능력 및 연구실적	○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 되어 있는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규모 적정성 (10)	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o 제안한 연구내용에 비추어 연구비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 연구기간은 적정한가? ※정액과제의 경우 연구기간만 심사	
기관활용 계획서	대학의 육성의지	활용계획서의 구체성	○학술연구교수 지원에 대한 연구인력 활용계획의 적절성과 추천순위 등	
평가 (10)	(10)	지원 필요성	○학술연구교수 지원의 필요성이 적절한가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ㅇ 심사주관 : 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
- ㅇ 심사내용
 - 선정 대상과제 검토
 - 선정과제 확정(정책적 고려 지원방안 포함)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 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수(연구)비 지급

가. 지급시기 및 방법

- 1) 박사후 국내연수 및 학술연구교수
 - 협약서 체결 후 연수(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하고, 연수(연구)기관은 연수(연구)자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 2) 박사후 국외연수
 - 협약서 체결 후 재단 방침에 따라 연수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함
- 나. 연수비사용 : 박사후 국내연수의 경우 연수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 장)은 과제별 협약체결 후 연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박사후 국외연수의 경우 협약 체결 후 연수자 개인이 집행함

2. 연수(연구)비 관리

- 박사후 국내연수(학술연구교수 포함)의 경우 지원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 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하며, 박사후 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함. 단, 아래 사항에 해 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협약서 및 연구계 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Ⅵ.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연수(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 및 점검

가. 박사후 국내연수

1) 월별 연수지도확인서 : 해당기관 연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매월 연수지

도교수의 월별 연수지도확인서를 접수함

2) 연수진행상황보고서 : 연수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제출(온라인으로

재단홈페이지에 입력)

나. 박사후 국외연수

1) 제출: 재단으로 제출

2) 연수착수보고서 : 연수 착수일부터 1개월 이내

3) 연수진행상황보고서 : 연수 착수일부터 5-7개월 이내(연수지도교수 의

견서 포함)

4) 귀국보고서(출입국증명서 포함) : 연수종료 후 2개월 이내

다. 학술연구교수

1)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 연차별 당해연도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

※ 2차 연차보고 시 전문학술지게재(예정) 논문 1편을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게재논문 미제출 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지원중단시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연수(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연수(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

3)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수(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함
- 연구요약문(국·영문)
- ㅇ 파일탑재
- 연수(연구)결과보고서(재단 소정양식)
- 연수지도교수의견서 1부(박사후 국외연수자에 한함)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4) 연수(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수(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 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나. 연수(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 1) 연수(연구)결과발표물 제출에 대한 책무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 (A&HCI급·SSCI급·SCI&SCIE급) 학술지)에 1년 연구는 1편, 다년 연구는 2편 이상 게재하거나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2) 연수(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
- 3) 연수(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 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 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6-〇〇〇〇〇〇〇)."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6-00000)."

- 4) 연수(연구)결과 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다. 연수(연구)결과 사후관리

- ㅇ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논문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과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국 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소유로 함
-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 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
 -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 에 따라 처리함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주관기관이 상기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함

3. 연수(연구)자 사후관리

가. 박사후 국내연수 사후관리(연수중단 등에 대한 사항)

- 1) 3개월 미만 연수중 중단시
- ㅇ 연수일까지의 연수비를 제외한 연수비 잔액반납
- ㅇ 연수기관지원금 전액 반납
- ㅇ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ㅇ 중단일까지의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후 종료
-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수중 중단시
- ㅇ 연수일까지의 연수비를 제외한 연수비 잔액반납
- ㅇ 연수기관지원금 50% 반납
- ㅇ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중단일까지의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후 종료
- 3)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연수후 중단시
- ㅇ 연수일까지의 연수비를 제외한 연수비 잔액반납
- ㅇ 연수기관지원금 반납 없음
- ㅇ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ㅇ 중단일까지의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 후 종료
- 대학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의 학술연구비 수 혜기관으로 취업한 후 연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잔액을 임용기관으로 송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토록 하고 당초 연수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종결토록 함(연수결과보고서 및 연수결과발표물제출 의무화)
- * 학술연구비 미수혜기관, 대학이외 기관 및 국외에 취업시는 중단일까지의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후 종료
- 4) 연수 9개월 이상 연수 후 중단시
- 연수비 잔액을 연구비로 지급하고 당초 연구계획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여 종결토록 함(연수결과보고서 및 연수결과발표물 제출 의무화)
- ※ 부득이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연수비 잔액을 반납 받고 중단 일까지의 연수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ㅇ 연수기관지원금 반납없음
- ㅇ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나. 박사후 국외연수 사후관리

1) 연수중단 등에 대한 사항

- 연수자가 연수도중 연수를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연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고, 그 시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일시 및 조기귀국허용일수 산정기준일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일수는 다음과 같다.
 - ※ 1개월 ~ 6개월 : 7일 / 7개월 ~ 12개월 : 15일
- 2) 국외연수자의 출국기한은 관리지침의 원칙에 따르되 현지사정 등으로 조기에 출국할 경우에는 연수개시일을 재단에서 따로 정함
- 3)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일시귀국과 조기귀국일자를 합하여 연간 총15일을 초과할 경우 체재비를 환수함
 - 일할 반납조치: 일시귀국과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일할반납토록 함
 - 전액 회수: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수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다. 학술연구교수 사후관리

- 1) 6개월 미만 진행 후 중단시
 - ㅇ 반납내역
 - 연구활동비 잔액반납
 - 연구비 전액반납
 - 연구기관지원금 잔액 반납
 -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ㅇ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2) 6개월 이상~1년 미만 진행 후 중단시
 - ㅇ 반납내역
 - 연구활동비 잔액반납
 - 연구비 잔액반납(정산서 첨부)
 - 연구기관지원금 잔액 반납
 - ㅇ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3) 1년 이상~2년 미만 진행 후 중단시
 - ㅇ 반납내역
 - 연구활동비 잔액반납
 - 연구비 잔액반납(정산서 첨부)
 - 연구기관지원금 잔액반납

-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ㅇ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학술지 게재 논문 1편 제출)
- 4) 2년 이상~3년 미만 진행 후 중단시
 - 0 반납내역
 - 연구활동비 잔액반납
 - 연구비 잔액반납(정산서 첨부)
 - 연구기관지원금 잔액 반납
 - 보험부담금 잔액 반납
 - 중단 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학술지 게재 논문 2편 제출)
 - ※ 연구 중단에 따른 연구지원비 반납은 실제 퇴직한 월의 날까지의일할 계산(퇴직한 해당 월의 일수로 산출)하여 잔액 반납

라. 기타사항

○ 연수(연구)기관은 연수(연구)자에게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수 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Ⅶ. 간접연구비 지원 : 지원대상사업이 아님

Ⅷ.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간접연구비 지원대상 이 아님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 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수가 곤란한 경우 및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하고, 연수중인 경우에는 체재비 지급을 중단, 소환, 배상 조치함
- 연수지원 신청시 제출한 당초 연수계획의 내용(연수과제, 연수기관, 연수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2006년 박사학위취득예정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함

[붙임1]

2006년 학술연구교수지원 연구비 산정ㆍ집행기준표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 건 비	•박사급연구원 수당(학술연구교수 본인 인건비)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 * 신청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됨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 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 교통비 등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 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직 접 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 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 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 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으로 실제소요액 지원 ※ <u>윤문교열비가 필요할 경우 기술정보활</u> 동비로 계상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 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 연구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 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기타	・연구기관지원금: 400만원 ・보험부담금 : 200만원	* 신청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됨

- ※ 여비의 산정은 소속 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함
- ※ 연구기기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
- ※ 학술연구교수의 직접비(연구비) 기본 지원액이 600만원이므로, 600만원을 상기 직접비 항목에 따라 필요 금액을 신청함. 단, 6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문의 : 복합학지원팀

Tel $(02)3460-5763\sim4$ Fax(02)3460-5579

○ 전산관련문의(온라인 신청 등): 학술정보팀

Tel $(02)3460-5542\sim7$ Fax(02)3460-5549

(붙임2)

< 양식 1 >

연수계획서

(2006년 박사후 국내·외 연수)

연수과제명	국	문		
	අි	문		
연수국가 (국외에 한함)			연수대학(기관)	
연수기관 지도교수				
연수기간 ※ 예시 : 1년(2006. 9. 1 ~ 2007. 83. 31))		

※ 아래의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총 15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함

- 1. 연수의 필요성
- 2. 연수의 내용, 범위, 방법
- 3. 연수기관의 우수성, 연수과제와의 적정성
- 4. 연수자의 연수능력
- 5. 연수목표와 기대효과, 활용방안
- 6. 연수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 7. 연수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8. 참고문헌(선행연구의 검토 포함)

< 양 식 2 >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2006년 박사후 국내·외 연수)

■ 본인의 대표업적으로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또는 선택 하고자 하는 대표업적 1편의 다음 사항을 작성하십시오.

업적 형태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
논문(저・역서,특허)제목	
학술지(저・역서/특허)명	
학술지 구분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SCIE급 학술지() 국내기타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발행연도(권/호 포함)	
발행(출판)기관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연구업적 저자 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역할구분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당초 논문초록 내용 그 대로 입력 가능)

< 양 식 3 >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2006년 박사후 국내・외 연수)

박사학위 논문 제목	
※ 아래 해당사항(*)은 동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람
* 학술지 (저 • 역서/특허)명	
* 학술지 구분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SCIE급 학술지() 국내기타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 발행연도(권/호 포함)	
* 발행(출판)기관	
*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양식 4>

연수 지도교수 추천서

(박사후 국내연수에 한함)

■ 추천의견

신 청 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_	
		영문)	TUSTUS	_	
연 4	수				
과 제 미	명				
추천의	견 :				

상기자는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 재단에서 수행하는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추천하며, 연수자가 연수를 종료할 때까지 지도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5년 월 일

추천인(연수지도교수)

소속기관 : 소속학과 :

직위 : 성명: (인)

※ 추천인은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파악하여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전일제(full-time) 취업자 제외)

<양식 5>

연수기관 학과장 추천서

(박사후 국내연수에 한함)

■ 추천의견

신 청 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신경 사	영문)	717 7 12	_	
연	수			
과 제				
추천 의	의견 :			

상기자는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 재단에서 수행하는 박사후연수과정지원 사업의 신청에 추천하며, 연수자가 연수를 종료할 때까지 소속 학과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5년 월 일

추천인(학과장)

소속기관 : 소속학과:

직위 : 성명: (인)

※ 추천인은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파악하여 연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하여 함 (전일제(full-time) 취업자 제외)

<양식 6>

박사후연수과정 연수과제 결과 요약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만 해당

선정연도	연수국가				
연수기관명					
연수과제명					
※ 아래 해당사항(*)은 연	수결과물을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람				
*학술지(저・역서/특허)명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학술지 구분	A&HCI급, SSCI급, SCI&SCIE급 학술지 ()				
	국내기타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발행연도(권/호 포함)					
*발행(출판)기관					

【내용요약】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하십시오

(붙임3)

<양식 1>

2006년도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

- 해당 기관에서 학술연구교수 후보 1인당 1부씩 작성
- 신청요강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분량은 자유롭게 기술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기관 및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절대 하여** 서는 안됨

1. 연구교수제 운영의 필요성

- 가. 학술연구교수의 인력 필요성 등
 - 연구소 강의 및 연구와 연계한 학술연구교수의 필요성

2.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2006년 ~ 2009년)

- 가.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연구소의 공동연구 참여 등 설명)
- 나. 기타 운영방안
 - ※ 각 항목은 연도별 세부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술연구교수 처우계획

- 가. 동 학술연구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한 계획
 - ※ "처우"는 재단의 지원비 외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의미합니다.

4. 2009년 이후 자체 재원에 의한 채용 및 운영계획

※ 대학에서 학술연구교수제 정착을 위한 계획(학술연구교수 운용을 통한 연구소 육성방안, 학술연구교수 임용을 위한 자체 재원 충당 방안 등 포함)을 기술하 십시오. <양식 2>

2006년도 학술연구교수 총(학)장 추천서

신 청 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_	
신 경 사	영문)	구인공속인오	_	
연 구 과 제 명				
연구소명		연구소장		
추천의견 :				
		연구소장 :	(서명)	
		-	, , = ,	

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신청자 (명)중(<u>순위</u>)로 추천하며, 연구자가 연구를 종료할 때까지 소속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6. . .

기관(대학)명:

기관장: (직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2006년도 학술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 7 7 7 1 H	국문	
연구과제명	영문	

≪ 목 차 ≫

Ι.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п.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Ш.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IV.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V.	참고문헌
VI.	박사학위 논문 요약문
VII.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VIII.	소명서(해당자)

- 신청요강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아래 순서대로 항목별 2~4매씩 총 10매~20매 내 외 분량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계획의 기술이 필요한 항목은 연차별로 작성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기관 및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절대 기재하여서는 안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주제 및 방법의 창의성 및 독창성, 학문적 가치 및 학문의 균형발전, 학 문적 파급효과 및 교육과의 연관성 등)

2.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연구 내용의 필요 충분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적적성 등) ※ 연차별 연구할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요망

3.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학문적 가치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한 연구배경 등)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논문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과제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및 교육에의 활용정도 등)

5. 참고문헌

(선행연구 등과 연계한 참고문헌 등)

<양식 4>

2006년도 학술연구교수 박사학위 논문 요약문

박사학위	국 문			
논문제목	영 문			
학위취득	일	년	월	일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양식 5>

2006년도 학술연구교수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 ※ 발표 논문의 초록을 입력하되, 초록이 없을 경우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 기재
- ※ 인문·사회·예술·체육 분야의 경우 2편, 자연분야의 경우 3편 작성 (단독 저·역서는 연구실적 2편, 공동 저·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하는 대표업적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함

업적형태 구분	저서()	역서()	학숙	울지()	외국특	허()
발표년월일	년 일	-	월	참여구	분	단독 ※공동	(일 ^{>}) / 공 경우 (동()인) 참여
게재지 (발행처)										
국문제목										

【내용요약】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십시오(당초 논문초록 내용 그 대로 입력 가능)

(붙임4)

박사후 연수 FAQ

1. 사업명이 학문후속세대양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사업입니까?

▶ 2004년도에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해외 Post-Doc.연수지원사업이 이관되어 2005년도에는 이관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몇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이름으로 별도 시행되어 사업 성격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문후속세대지원을 위해 시행되던 사업을 통폐합하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은 세부적으로 박사후 연수(국내외)와 학술연구교수로 구분되어 시행됩니다.

2. 이공계분야 박사후 국외연수는 작년까지 시행된 이공계분야 해외 Post-Doc.지원사업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 첫째, 지원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미취업자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임교원 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은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과 국제공동연구(국내연구인력해외파견)지원사업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는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전임교원은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에,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은 국제공동연구(국내연구인력해외파견)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둘째, 신청 업적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급(SCI 및 SCIE)에 1편 이상의 업적이 있는 자가 신청가능합니다.

3. 2007년도에는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 2007년도부터는 이공계분야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대상에서 전일제 취업자가 제외될 예정이며, 공 모횟수를 1회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전일제 취업자는 모든 기관을 포함합니다. 즉 교사,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연구원 등 소속기관에서 전일제(Full Time)로 취업하고 계신 신 청예정자들은 2007년도부터 이공계 분야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전일제(Full Time) 취업자가 아닌 시간제(Part Time) 취업자는 무소속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 능합니다.

4. "이공계 전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합니까?

- ▶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간호학 포함), 농수해양학 및 일부 이공계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복합학"(재단의 학문분야분류표 참조)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신청과제의 "이공계 전 분야" 부합 여부는 전공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하시게 됩니다.
- 5. 저는 재단의 다른 연구지원사업(예, BK21, 협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인데, 동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 수혜 받은 연구과제(책임, 공동)의 연구기간과 국외연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되어야만 국외연수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국외연수의 경우, 출국기간 내 출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해당 기간 내에 출국하시지 못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출국기간 이전 출국자는 선정발표 이후 사유서(출국기간 이전 출국 사유)를 제출 받아 사유서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학술연구교수지원 FAQ

- 1. 현재 취업 중인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
- ▶ 신청은 가능합니다.단,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퇴직하여야 합니다.
- 2. 학부졸업과 동일한 대학의 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 ▶ 가능합니다. 2005년도와 달라진 사업내용입니다.
- 3. 한 대학교에서 캠퍼스별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캠퍼스(예: 한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전캠퍼스 등)는 별도의 대학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4. 학위논문은 연구업적 산정시 인정됩니까?
- ▶ 아니오.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연구계획서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대 3년 지원이기 때문에 3개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 연구계획서는 3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 항목에 걸쳐 연차별 세부과제 계획이 반
 드시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도별 계획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항목의 경우, 연차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